◉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32호

과태료 부과 처분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4월 27일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1. 처분대상

업체명	업종 [등록번호]	대표자명	소재지
주식회사 에이메르	위생용품수입업 [제20180007438호]	이*영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-1 (왕길동)
유진비엘라(주)	위생용품수입업 [제20180007701호]	임*성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(관양동) 아크로타워 a 동2912호

2. 처분사항

○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(납부기한: 2022. 5. 25.까지)

3. 처분사유

○ 2020년 정기(보수) 위생교육 미이수

4. 근거법령

○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제9조제1항

○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[별표3] 2.개별기준 라목

5. 기타사항

○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,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미납 시 불이익

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　　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
다.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　　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

○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* 처분 관련 문의: 운영지원과 장효진(☎ 02-2110-8024, jhj8817@korea.kr)

* 납부 관련 문의: 운영지원과 심미연(☎ 02-2110-8017)